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적재산 전략

성 명 환*

획일화시대에서 독자적인 고유의 특성을 갖는 것은 현재와 같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큰 무기가 된다. 농업에서 유래된 고유의 재산을 지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본 농림수산성이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산 전략을 육성자권, 와규(和牛), 지역브랜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지적재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

2002년 7월에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고, 지적재산입국(立國)을 그 목표로 선언하였다. 지적재산입국이란 발명·창작을 존중한다는 일본의 방향을 밝히고, 상품 만들기에 더해서 기술·디자인, 브랜드나 음악·영화 등 콘텐츠와 같은 가치 있는 정보 만들기, 즉 무형재산의 창조를 산업의 기반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경제·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비전이 뒷받침된 일본의 국가전략이다. 또한 이 대강에 의해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2003년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어 지적재산입국을 목표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hsung@krei.re.kr 02-3299-4366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성·청이 연대·분담하여 시행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이라는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2. 농림수산성의 지적재산 전략

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은 고품질·고부가가치, 안전·안심 등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 관계자의 노력이나 기술,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 소비자의 신뢰 등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 귀중한 지적재산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의 국제화가 진행되는 중에 <표 1>과 같이 딸기, 꿀꿀이나 황도 등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이 해외에 위법으로 반출되어 생산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수출되었던 와규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국종과의 교잡종 등이 생산되어 그 고기 또는 송아지가 일본으로 역수입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유통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향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전략적, 종합적인 지적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 안에 지적재산 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지금까지도 농림수산성은 시험연구기관에 의한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이나 특허권 등의 취득,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와 관련되는 제도의 운용 등에 대처하여 왔다.

표 1 일본 육성자권의 침해사례

식물명	품종명	권리자	개 요
강낭콩	유키데보오 (雪手亡)	홋카이도 (北海道)	○중국에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에 수입, 판매됨. 홋카이도로부터 경고에 의해 수입업자는 중국으로부터 고급 흰 소(白あん)원료용 강낭콩의 수입을 자숙
소두 (小豆)	기타노오또메 슈마리 (きたのおとめ しゅまり)	홋카이도 (北海道)	○중국에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에 수입됨..홋카이도로부터 경고에 의해 수입업자는 중국으로부터의 일본품종 소두(小豆)의 수입을 자숙
딸기	레드펄 (レッドパール)	개 인	○한국의 일부 사람에게 생산·판매를 허락했는데 한국내에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에 수입, 판매됨. 육성자권자가 수입업자를 상대로 재판을 시작해 수입을 중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화해
	도치오또메 (とちおとめ)	도치기현 (栃木県)	○한국에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에 수입·판매됨. 도치기현이 허락처의 업자에게 문서로 주의
꿀풀	히노미도리 (ひのみどり)	구마모토현 (熊本県)	○중국에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재배되고 있다고 해서 2003년12월, 구마모토현이 관세정율법에 의거해 수입금지를 신청. 2005년 3월에는 세관이 八代港으로 수입되려던 ‘히노미도리’꿀풀을 발견·적발하여 형사고발. ○2005년 11월 7일에 구마모토지검이 기소함. 2006년 2월 1일에 구마모토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
황도	베니슈호오 (紅秀峰)	야마가타현 (山形県)	○호주에 종묘가 위법으로 반출되었다고 해서 2005년 11월 16일, 야마가타현이 종묘법에 의거해 호주에서 과실의 생산·판매를 경영하는 자 등을 형사고소함. 2005년12월 28일, 야마가타현이 관세정율법에 의거해 수입금지를 신청.
			○중국에서도 종묘가 위법으로 반출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여건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응해야할 중점시책을 검토하였다. 2006년 6월 2일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 ‘농림수산성에서의 지적재산 전략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와 활용

- ① 2010년도까지 연간 출원건수 2,000건을 돌파(2005년도는 1,385건), 2008년도까지 심사기간을 세계 최속 수준인 2.5년으로 단축(2005년도 3.2년)을 목표로
- ② 권리침해대상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육성 품종이나 가공품, 버섯류, 수산물 등을 포함하는 DNA 품종식별기술의 개발촉진, 품종보호 공무원의 증원 등
- ③ 권리침해에 대해서 보다 유효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도로의 재평가나 해외에서의 육성자권의 전략적인 취득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연내 목표로 전략을 수립

(2)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와 활용

- ① 와규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계되는 전략적 특허의 취득과 활용의 촉진
- ② 와규 정액의 유통관리체제의 정비를 촉진
- ③ 가축개량증식법, 쇠고기 생산이력제 등을 활용한 와규 표시의 엄격화 등에 관한 심층 검토를 연내에 실시

(3) 지역 브랜드의 확립

- ① 지적재산제도의 보급과 개발을 위해서 세미나 등의 개최, 지적재산의 활용사례나 비즈니스모델의 제시
- ② 각종 사업이나 보급조직 등에 의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면으로 지역의 대처를 지원

(4) 특허 등 기술이전에 의한 신수요의 창조

- ① 신수요의 창조를 향한 계능 연구 등을 촉진하여 기능성 식품과 신소재 등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산지육성을 추진
 - ② 농림수산성관계 시험연구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식품의 기능성 해명이나 농림수산물의 신품종 개발 등, 앞으로 5년간 특허출원 900건 이상, 품종등록출원 150건 이상을 목표
- (5) 지적재산에 관한 보급개발과 인재육성
 농림수산분야에서의 지적재산 인재를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보급지도원의 지도력 향상, 학교교육과의 연대, 연구자의 의식개발 등을 실시
- (6) 추진체제의 정비
 지적재산전략본부에 민간기업의 전문가 등에 의한 전문가회의를 설치

3.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와 활용

일본에서 식물신품종의 보호는 1978년 종묘법의 제정(품종등록제도의 도입)에 의해 식물신품종의 육성자가 품종 그 자체를 등록해서 그 품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직접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91년에 개정된 UPOV 조약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8년에 종묘법을 개정하고 품종등록자에 의한 등록품종의 독점적인 이용권을 법적 권리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여 이를 “육성자권”이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에 의해 육성자권을 가진 자가 등록품종의 종묘 등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하여 판매이익의 증가나 육성자권의 허락에 의한 로열티 수입 등의 경제적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무단으로 해외에 종묘가 반출되는 등의 문제에 대응해서 벌칙의 강화, 가공품 권리효력의 증대,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종묘법을 거

습 개정하였다. 동시에 2003년에는 관세징율법을 개정하여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치도 추가되었다.

또한, 권리자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종보호 공무원을 ‘종묘관리센터’에 배치하여 침해에 관한 상담, 침해가 의심되는 품종과 등록품종을 비교하는 품종 유이성 시험, 침해 상황의 기록 작성, 침해품의 종묘 등 증거품 기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육성자권 침해에 대해서 보다 유효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도로의 재평가, 해외에서의 육성자권의 전략적인 취득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 아래에 법률전문가, 종묘회사,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식물신품종 보호의 강화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제도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종묘법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4.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와 활용

와규는 일본 고유의 육용우이고 개량기관이나 농가의 오랜 노력에 의해 개량되어 온 일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와규에 대해서도 2006년 4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전문가에 의한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와규에 대해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지적재산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계되는 문제점과 가능성을 밝히는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2006년 8월 3일에 개최되었던 검토회에서 특징적인 와규 유전자(좋은 맛, 향 등)에 대해서 전략적인 특허의 취득과 적극적인 활용, 와규 정액의 유통관리 철저, 와규 표시의 엄격화 등을 포함한 중간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구체화를 향해서 유전자원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해석 등의

연구개발의 촉진, 바코드 등을 이용한 모델적인 정액 유통관리체제의 구축과 실증, 와규 통일마크를 활용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개발에 위한 예산도 요구하고 있다.

와규 표시의 엄격화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가 와규는 국산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을 표시를 검토하는 것이다. 전문가, 소비자, 생산자 등 와규 관계자로 구성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검토회’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5. 지역브랜드의 확립

공예품 이외에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유바리메론’(夕張メロン), ‘마에사와규’(前沢牛), ‘신슈된장’(信州味噌) 등 상표 취득을 활용하여 지역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브랜드를 상표로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지역단체상표제도’(지역명+상품명으로 된 상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브랜드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신용력 유지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 3일 현재 4월부터의 출원 접수건수는 597건, 이 중에서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접수건수는 431건에 달한다. 아직 등록된 상표는 없으며, 특허청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역브랜드 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브랜드 확립을 위해 관계자의 의식 양성, 브랜드 생성기반 기술개발,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산업센터’에서는 식품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단체상표의 제도나 등록의 실무 소개 등 지적재산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6. 특허 등 기술이전에 의한 신수요의 창조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전국 4개의 연구독립행정법인을 중심으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 등과 연대하면서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에 기초한 시험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성과로서 2005년도말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 등 모두 1,173건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연구독립행정법인 등의 연구성과는 민간기업 등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3년 6월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한 기술이전기관(TLO)을 설치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2005년도 실적은 혈압강화작용이 있는 GABA(Gemma Amino Butyic Acid)를 이용한 신규 식재의 개발과 제품화, 저온에서 호화(糊化)하는 고구마전분 등 64건이었다.

현재 보유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TLO의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는 지적재산 전문부서(지적재산센터)를 신설하거나 연구성과와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각종 시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7. 지적재산에 관한 보급, 개발 및 인재 육성

이상과 같은 지적재산에 관련된 대치는 시작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지적재산의 보호나 활용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심에 있는 관련 인재가 부족하고, 그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도부현의 보급지도원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도, 지적재산의 활용사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중심이 될 인재를 육성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농업종사자 등에게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8. 추진체제의 정비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에 관해서 앞으로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추출과 그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2006년 7월 28일 지적재산전략본부 아래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였다. 제1회 전문가회의에서는 농림수산성의 각종 시책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이나 식문화, 재배육성의 노하우나 시스템 등 농림수산성의 정책에서 결여되어 있는 점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9. 시사점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적재산정책에 대해서 식물신품종이나 가축유전자원, 첨단 연구개발의 성과, 산지브랜드, 경영노하우 등 지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을 시급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도 가축유전자원의 보호나 새로운 산지브랜드 만들기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적재산정책은 관계자의 실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의 창조 촉진, 보호 강화, 활용 추진을 도모하여 지적창조 사이클을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연구, 생산, 유통, 소비의 각 현장에서 지적재산의 활용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여 일본 농림수산물물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神山修, '農林水産省における知的財産戦略について', 「農業と経済」(2006년 12월호, 제72권 제15호) 발췌정리